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5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
이용료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,
수탁관리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
나. 사용료 반환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,
일부내용 중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에 대한 자구를 수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 사유 및 수탁 대상 수정 (안 제5조제1항)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라 손해보험 의무가입
조항 삭제(안 제8조)
- 다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른 이용료 결정방식 명
시(안 제16조제2항)
- 라. 사용료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18조제2항)
- (1) “월 사용료” → “총 사용료”

(2)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할 때 :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,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
마.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맞춤법 등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민법」
- (2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- (3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

라. 기 타 : 신규대비표 붙임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시장이 전문적 관리와 근로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 전단 중 “한번”을 “한 번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사용료)”를 “(사용료 징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재산을 사용·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사용료의 감액)”을 “(사용료의 감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감액”을 “감면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 중 “감액”을 각각 “감면”으로, “감액률”을 “감면율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제1호 중 “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1항제1호”로, “전액과 사용료”를 “전액과 총 사용료”로, “월 사용료”를 “총 사용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.

제18조제2항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사용료”를 “총 사용료”로, “월 사용료”를 “총 사용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탁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협약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탁운영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한 이후 처음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후 시장이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의 사용료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운영) ① 센터 및 회관의 운영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리 및 운영을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향상과 근로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	제5조(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시장이 전문적 관리와 근로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한 번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재산의 관리) ①·② (생략)	제8조(재산의 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수탁관리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사용료) (생략)

<신설>

제17조(사용료의 감액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.

1. ~ 9. (생략)

10.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감액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률이 가장 많은 하나만 적용한다.

제18조(사용료 반환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삭제>

제16조(사용료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재산을 사용·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.

제17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

감면 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
----- 감면 -----
----- 감면율 -----

-----.

제18조(사용료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
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
의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
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
여 반환하고, 사용 개시일 이
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
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
후 월 사용료의 10퍼센트에
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
반환 한다.

<신 설>

2.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
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10퍼센
트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, 사
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는 취
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
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

-----.

1. 제1항제1호-----

----- 전액과
총 사용료-----

----- 총 사용
료-----

-----.

2.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
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
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에
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
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
반환한다.

3. -----

총 사용료-----

<u>월 사용료</u>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한다. 3. (생략)	----- ----- ----- <u>총 사용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--	---

관련법령

□ 「민법」

제393조(손해배상의 범위)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.

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.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4조(손해보험 및 공제계약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(共濟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1. 건물, 선박

2.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·기계 및 기구

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(有償)·무상(無償)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, 전세금의 산정,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3.6.21.>

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. <신설 2013.6.21.>

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,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. <개정 2013.6.21., 2014.7.7.>

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8.4., 2013.6.21.>

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. <신설 2010.8.4., 2013.6.21.>

[전문개정 2009.4.24.]

제21조(수탁재산의 이용료 등)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·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,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0.8.4., 2013.6.21.>

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4., 2013.6.21.>

③ 제2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3.6.21., 2014.11.19.>

소관 실·과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남 동 수
	담 당	박 만 용
	담 당 자	김 중 훈 (480-6212)